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이론편 61~61p		[헌법불합치, 2020현마1181, 2022.11.24., 국가공무원법(2018.10.16.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)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(2017.10.24.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) 제17조 제2호 가운데 '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'에 관한 부분은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. 위 법률조항들은 2024.5.31.을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.][헌법불합치, 2020현마1605, 2022현마1276(병합), 2023.6.29., 국가공무원법(2018.10.16. 법률 제15857호로개정된 것)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(2014.1.21.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, 2020.6.2.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5항 가운데 '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최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'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(2018.10.16. 법률 제15801호로개정되고, 2020.6.2.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·청소년의 생보호에 관한 법률(2014.1.21.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, 2020.6.2.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제5항 가운데 '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최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개업되 '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최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1호의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'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. 위 법률조항들은 2024.5.31.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.] ※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같은 내용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2024.12.31. 개정시 "[2024.12.31. 법률 제20621호에 의하여 2023.6.29.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의4를 개정함.]"이라고 기재하고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음	[2024.12.31.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.11.24.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.]
문제편 74~74p 번호 : 128	해설	① (×) 1949년 2월 창덕궁경찰서 폐지, 경무대경찰서 신설 → 종로경찰서 관할인 중앙청 및 경무대 구내가 경무대경찰서의 관할구역이 되었다.★ 대통령당선이 확정된 자와 전직대통령 및 가족의 호위는 1981년 <mark>대통령경호처의</mark> 임무에 추가되었다.	① (×) 1949년 2월 창덕궁경찰서 폐지, 경무대경찰서 신설 → 종로경찰서 관할인 중앙청 및 경무대 구내가 경무대경찰서의 관할구역이 되었다.★ 대통령당선이 확정된 자와 전직대통령 및 가족의 호위는 1981년 <mark>대통령경호실의</mark> 임무에 추가되었다.
이론편 163~163p	정답	전합과 해설区 01 × 02 ○ 03 ○ 04 × 05 ○ 06 ○ 07 ○ 08 ○ 09 × 10 × 11 ○ 12 ○ 13 × 14 ○ 15 ○ 16 ○ 17 ×	전답과 해설区 01 × 02 ○ 03 ○ 04 × 05 ○ 06 ○ 07 ○ 08 ○ 09 × 10 ○ 11 × 12 ○ 13 × 14 ○ 15 ○ 16 ○ 17 ×
이론편 163~163p	오타	10 대테러조사에 대한 정의이다(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8호).	11 대테러조사에 대한 정의이다(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8호).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